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34-01





# 국·공립학교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안내서



# CONTENTS

I .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개념	04
Ⅱ.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06
i .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 · 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신청	08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12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13
ㆍ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16
ii.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 금지 행위	18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18
· 가족 채용 제한	21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ㆍ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34
Ⅲ. 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36

# I.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개념**

### 🌀 이해<del>충돌</del>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약칭
- 2022. 5. 19. 시행

### 🕟 이해충돌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
  - ※ 사립학교는 적용대상 아님





#### 😘 공직자(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제1항)

- 공직자 : 각급 국 · 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 계약직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등 모두 적용 대상
- 공무수행사인
- ①「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등
-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하다)
-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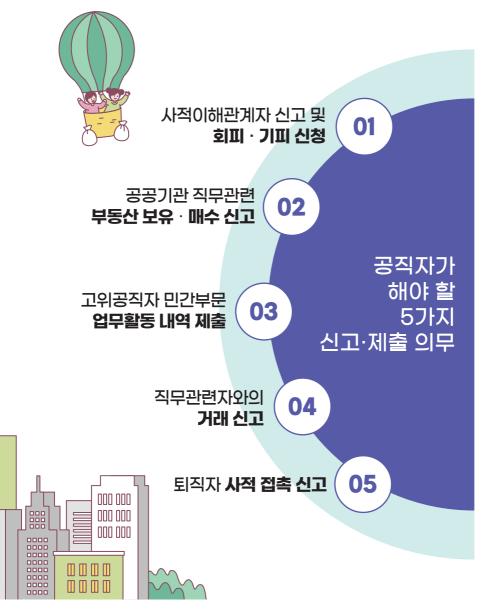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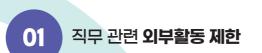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적용











**02**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05

03 수의계약 체결 제한

3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8888 0000 0000 0000 0000 000 000 00000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신고대삼 직무(법 제5조제)항)

-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지정 · 등록, 등재 · 인정 · 증명, 신고 · 심사, 보호 ·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병역판정검사, 징집 · 소집 ·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개인 · 법인 · 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조세 · 부담금 · 과태료 · 과징금 · 이행강제금 등의 조사 · 부과 · 징수 또는 취소 · 철회 · 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의 배정 · 지급 · 처분 ·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 ·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 구매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공직자의 채용 · 승진 · 전보 · 상벌 ·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각급 국립 · 공립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시행령 제4조)

-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 · 처우 · 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직무관련자(법 제2조제5호)

####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 포함)·기준(규정·사규·기준 등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개인·법인·단체·공직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Point 학부모는 교사의 직무과연자

친권이 있는 학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며, 자녀의 이익 또는 불이익에 깊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사적이해관계자(법 제2조제6호)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생계를 같이하는' 의 의미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 대표자 ·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로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주식·지분 30%, 자본금 50%)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 · 규칙 포함) · 기준(규정·사규·기준 등 포함)에 따라 지휘 · 감독하였던 실 · 국 · 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법령 · 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 · 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의 거래 상대방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 신고·회III 방법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14일 이내 청렴포털 또는 서면으로 신고
  - → 소속기관(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7일 이내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조치

#### 위반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배우자가 다니는 학교와 관련된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시·도 교육청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해당 학교에서 감사대상 직무 관계자라면 해당 배우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감사업무 수행 공무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다만, 배우자가 감사대상 직무 관계자가 아닌 경우, 감사업무 수행 공직자는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신고·회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 등에 따라 회피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면 그에 따라야 함



상급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예: 예산 지원, 인사, 감사, 평가 등 지도·감독 업무 등)하는 경우 해당 학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함.

예산 지원(제6호), 인사(제10호), 지도·감사·감독(제2호), 평가(제14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예산 지원 등을 받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나, 해당학교가 자녀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장학생 선발·지원 업무를 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자녀가 학교추천 장학생이 된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및 회피신청의 의무가 있음



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처리함. 교장은 사적이해관계자 회피 신청을 한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관련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날'은 언제를 말하는지?

'안 날'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함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해당 공직자가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적이해관계자의신고의무위반사실을통보할책임이있는소속기관과수사기관에있음

### ②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이무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 국립·공립학교는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립·공립학교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신고의무발생

-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신고 방법

- (보유) 안 날부터 14일 이내
- (매수) 등기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위반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이무자

-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공개대상자'와 그 범위 일치
  - \* 국립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속한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는 없음

#### **제출이무발생**

•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 제출방법

- 임용(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내용
  -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위치 기계대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 경매 ·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공직자

신고[H삼행위: ① 금전거래 ② 부동산거래 ③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체결

#### 신고이무발생

•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신고대상 행위 한 것을 알게 된 경우



\*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 50% 이상 소유한 법인·단체

신고방법 안 날부터 소속기관장(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제재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거래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된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되기 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신고 의무 발생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직무과려자와의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해당함.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부모는 교사의 직무관련자이고, 그 직무관련자와 아파트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대상에 해당함

참고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부모와 전세 또는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계약행위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함



학부모가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구점에서 교사가 본인이 필요한 문구를 사비로 구매하는 것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교사의 입장에서 학부모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일반 문구점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문구를 구매하는 행위는 법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인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임.

다만, 해당 구매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가의 물품 또는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라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행하여지는계약체결행위"로 보기 어려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이무자

• 공직자

#### 신고대상행위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 신고이무발생

- 소속 공공기관의 "퇴직자(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신고대상행위를 하는 경우
  - \* 직무관련자가 아닌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 의무 없음

#### 신고 방법

- ① 사적접촉 전 소속기관장(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②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

#### 위반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퇴직자와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퇴직자의 손주 돌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3가지 경우 외의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사적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의 3가지 유형이며, 이외의 접촉은 신고의무가 없음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대상이 되는 여행의 범위에 등산도 포함되는지?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제1항에서 사적 접촉의 행위 중 하나인 '여행을 같이 하는행위'에서의 '여행'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임

따라서 '등산'을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서 하였다면 사적 접촉 신고 대상 행위로 보임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에서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후 기관의 조치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하다.

#### 제한내삼자

• 공직자

#### 제한행위

-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예)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예) 교사가 수행평가 관련 정보를 입시학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교사가 교육과정 개발 위탁사업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가능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예시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강연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
-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참석
- 공청회·가담회의 좌장
- 신문·잡지에의 기고
-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예) 교사가 교육관련 단체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행위

#### 위반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사가 근무 중 브이로그 촬영, 수업외 직무와 관련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한되는 외부활동인지 여부?

해당 외부활동이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는 외부활동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또한, 교사는 근무시간 중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이뤄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업외 직무와 관련된 유튜브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의 일환으로서 겸직허가의 대상에 해당함(「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참고)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직무와 관련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 상한보다 적은 금액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임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유튜브 등 사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기를 수수하는 사익추구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 외부활동에 해당하여 제한됨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와 「국가공무원법」등에서의 겸직금지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겸직금지 규정과는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본인 직무와 관련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처분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함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 2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 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 1. 소속 고위공직자
-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지한내산자

• 국·공립학교

####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 위한 시 제재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란?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란 채용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해당 공직자의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모두 포함

\*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상급결재권자도 해당 업무 담당 공직자에 해당함 예) 학교의 채용업무 담당 실무자. 관련 부서장(행정실장), 교감, 교장 모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임.

####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 '생계를 같이하는' 의 의미?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



#### 가족 채용 제한 예외 사유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 · 직위와 같은 직급 ·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 ·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가족채용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3조(가족 채용 제한)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 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제2항에서 같다)의 장은 채용대상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공공기관 채용업무 담당자는 채용대상자는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단,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됨
- 해당 확인서는 채용 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확인만을 남겨 둔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받음을 원칙으로 함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	시(직급)
채용기관	채용사유			
	성명	주소		
채용대상지				
(확인인)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	정일
		기족 채용 제한 확인사	항	
	채용대상자의 <b>가족</b> <b>담당하는 공직자</b> 가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이느가?	또는 채용업무를	[ ] 예 [ ] 아니의 [ ] 해당없음
	8000 8900	W = 11:		1 41 6 11 6
① 기족채용				
	채용대상자의 <b>가족</b>	[]예[]아니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해당없음
② 예외		<b>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b> 이 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		r 1 mlr 1 nH l<
해당 여부		ITS 및 보고 하고 하다에 하 I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기		1 1 11 1 1 1 1 1
	기의 초로 나타내 그네	4 TAU KUR 기존 레이 제작(A		SIGNER IN DIGE
		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어 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		
			년	월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시항		
① "가족채용":	리 가족은 「민법」제779조	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가족 채용 제한의 적용 대상자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인사담당 부서장의 상급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범위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모두 포함함



법령의 근거가 아닌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를 한 경우 가족 채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2항에서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조례·규칙)에 근거가 없는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채용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로 보임



일용직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공기관은 일용직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수업 결원(업무수행 곤란) 시 해당 조항의 공직자의 가족을 대체자 또는 근로자로서 채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 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속 고위공직자
-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제한대삼

• 국·공립학교

#### 제한행위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위반시 제재

• 자신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징계 및 3천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는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 \*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상급결재권자도 해당 업무 담당 공직자에 해당함 예) 실제 계약한 사람(법인카드로 결제한 교사 등 포함), 학교의 계약업무 담당 실무자, 관련 부서장(행정실장, 계약부서장), 교감, 교장 모두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에 해당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삼자

-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①)
- 해당 학교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2)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3)
-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단독·합산하여 주식30%이상, 출자지분 30%이상, 자본금 50%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수의계약이란?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 대상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등에 따라 다수의 견적 제출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로 계약상대방을 선정하는 방식과 같이 경쟁입찰의 방식을 일부 원용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제한되는 수의계약에 해당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함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학교의 계약담당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함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국가계약법 100만원 미만 지방계약법 200만 원 미만 '22 11월 기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행동강령과-6507호 공문 참조)
  - →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나, 위의 경우에 한해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견적에 의한가격결정등)** ⑦ 제1항 ·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③ 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전기 · 가스 · 수도 등의 공급계약
-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 · 구매 · 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1 목
	발주내용			
발주자	일구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 == , ,
	성명	소속		[]개인 []법인
#약상대 (확인인		주소		[ ] 단체 [ ] 기타
V-100				
		수의계약 체결 제한 혹	인시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 업무을 법령상시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시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12조에 따른 수익계약 체결 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년	월 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의 범위는?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의 범위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관에서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기관의 계약담당 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할 때, 법제12조제1항 제2호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부서의 계약업무 수행자는 계약 상대방에게확인서를 제출받아야할 의무는 없는지 여부

사업부서에서 해당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해당함. 다만, 확인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계약담당부서가 있는 경우, 계약 부서의 계약 담당 공직자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대해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자일지라도 수의계약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계약업무 담당자가 아닌 일반업무 담당자(사업부서)가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 또는 식사를 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학교의 경우 계약업무 담당자가 기관의 지출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인 신용카드 사용은 품의자가 하고 원인행위 등 시스템 처리는 계약업무 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가 하고 있음.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 또는 식사를 하는 행위도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경쟁에 따른 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함. 다만,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기관의 계약담당공직자가 학교장터(S2B) 구매몰 및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 여부

#### ①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를 통하여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모두 가능하므로, S2B를 통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제한대상에 해당함

#### ② 온라인 쇼핑몰 구매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



계약업무 담당자가 온라인쇼핑몰 등 이용으로 업체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업무 담당자가 확인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는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으로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기관 자체규정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범위(예 1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생략 등)를 한정해도 되는지 여부

기관 자체규정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한정할수 없음. 다만, 공문을 통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이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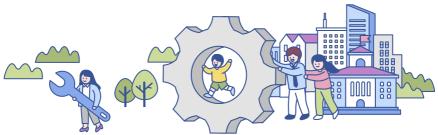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이거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대상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됨



계약담당공직자는 학교에서 주로 계약하는 업체로부터 반복해서 교구를 구입하는 경우 등 기관의 주거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계약담당공직자가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품과 관련해 주거래 업체가 있는 경우 등 동일한 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한번 제출받은 후 반복해서 제출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기존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상황과 비교해 수의계약의 상대방 업체 대표의 변경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변경이 있고, 해당 업체와 재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함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공공기관물품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치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한대삼자

• 공직자

#### 제한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위반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예) 교사가 교육에 사용해야 할 카메라 등 촬영도구를 본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영상 제작에 사용하는 경우

교사가 학교 체육관을 본인 체육 동호회 활동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직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가 가능한 사례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개인 신분으로 참석하는 경우에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관용 물품의 사적 사용에 해당함.



학교에서 예산으로 가입한 교수학습자료 이용사이트에서 참여한 학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1등으로 당첨된 학교에 가입교사 수만큼 경품으로 캠코더를 지급할 경우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해도 되는지?

해당 경품은 학교의 예산 집행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개인이 수익할 수는 없고, 학교 비품으로 등록하거나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타기관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타기관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가능함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예: 국제전화)하는 경우도 공용물의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일상적이고 과다하지 않은) 수준의 복사기,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 등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적인 목적의 국제전화 등 과다한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이 될 수 있음

### <mark>5</mark>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 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한대삼자

- 공직자\* 또는 제3자\*\*
-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포함
- \*\*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임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제3자

#### 제한행위

- 공직자 : 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②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자 :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 위반시 제재

- 징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직무상 비밀이란? ....

•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

#### 미공개정보라? ....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등 이용에 해당하는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직무상 비밀 등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미공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왔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함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학생이 이를 이용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교사가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여 학생이 이를 이용하였다면 교사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이를 이용한 제3자 (학생 또는 학부모 등)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Ⅲ. 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 11 법 위반행위 신고

#### 신고 방법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증거와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

#### 신고기관

01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학교)

02

감독기관(교육청)

03 감사원

04

수사기관(검찰, 경찰)

05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방법

- ① 청렴포털: www.clean.go.kr
- ②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③ 방문신고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 신고상담전화(무료):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2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누구든지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 됨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불이익 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최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 밤해ㆍ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책임감면

자진신고 등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Ⅲ. 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 ③ 신고자 보상

#### 포삼금 지급 가능(초(대 5억원)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포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 가능(최대 30억원)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 지급

#### 구조금 지급 가능

신고자 등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